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12월 10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 조촌동주민센터 담당자 : 장 대통 문의전화 : 063-454-7528 )

| 성 명<br>생 년 월 일    | 주 소           | 지연 신고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문*숙<br>1975-01-18 |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3길 | 무단전출    |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9년 12월 03일

조촌동장

